



[순공궁 순대곰창전골] 정보공개서

김천식당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김천식당

등록번호 : 2023182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3-12-13

최종 등록일 : 2024-11-21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1길 25-4

전화 : 1670-1987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1670-1987

대표 이메일 주소 : 1987kc@naver.com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첨부 1) 재무현황

첨부 2) 순공공 순대공창전공 가맹점 현황

첨부 3) 예치신청서

첨부 4) 수령확인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 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김천식당	순곱궁 순대곱창전골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1길 25-4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6.05.01.	이유림, 석지호	1670-1987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356-37-00122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대표자	순곱궁 순대곱창전골/이유림	순곱궁 순대곱창전골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1길 25-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유림	1670-1987	-
대표자	순곱궁 순대곱창전골 석지호	순곱궁 순대곱창전골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1길 25-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석지호	1670-1987	-

3. 내·외국기업 여부

당사는 내국기업으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음.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서 등록 전 3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 내역이 없음.

5.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순곱궁 순대곱창전골]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순곰궁 순대곰창전골	
상 호	순곰궁 순대곰창전골 OO점	
상 표		상표 등록번호 : 4019598380000

6. 바로 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350,928	112,248	238,679	923,460	128,519	132,753
2022년	363,783	142,275	221,507	1,318,568	193,811	178,827
2023년	421,061	230,246	190,815	1,280,564	207,220	167,307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

관련여부	이름	현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유림	대표이사	2016. 05. 01 ~ 현재	대표이사	총괄
	석지호	대표이사	2018. 7. 17 ~ 현재	대표이사	총괄

※ 상기 표에서 ‘현재’의 시점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8.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12.31.	2	0	1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순급궁 순대급창전골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출원 및 출원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10.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신청만 한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신청 여부(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순급궁 순대급창전골	제43류 상표	2021.01.10.	<u>4019598380000</u>	석지호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순급궁 순대급창전골] 가맹사업 현황

1. [순급궁 순대급창전골] 을 시작한 날 : 2016.05.01.(직영점을 시작 한날)

2. [순공공 순대공창전골]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김천식당	순공공순대 공창전골	이유림 석지호	(미시작)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1길 25-4

3. [순공공 순대공창전골] 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순공공 순대공창전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순대공창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순공공 순대공창전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해당사항 없음)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세종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순공공 순대공창전골] 가맹점 수

(해당 사항 없음)

(단위: 개)

연 도	연 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 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6. [순급공 순대급창전골]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순급공 순대급창전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사항 없음)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	------------	---------

2023	0	0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순급궁 순대곱창전골]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가 없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순급궁 순대곱창전골]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34	-	-	-	-	-
광 고	-	-	-	-	-	-
		-	-	-	-	-
		-	-	-	-	-
		-	-	-	-	-
판촉		-	-	-	-	-
		-	-	-	-	-
		-	-	-	-	-

11. 가맹금 예치

(해당사항 없음)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2)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보증보험 (주)	
보험계약자	김천식당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범위	예치금액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자 영업개시일 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지급	

※귀하는 가맹계약체결일에 [IV-1-3]의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나 당사가 위 표의 보험인과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사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는 예치 가맹금을 귀하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대신 보험증권을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귀하가 교부 받은 보험증권의 보험 효력은 위 표의 보험기간과 동일하므로 동 기간까지 보험증권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해당 사항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 사항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해당 사항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순금궁 순대곱창전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해야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대상여부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11,000	확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1-1)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최초가맹금 내역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입비	11,000	계약 체결 익일부터 3일 이내	영업 개시 이 전까지 계약 해지	-개점 전 : 제공서비스(교육 및 정보 제공 대가)의 비용 및 영업개시 행사를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을 제외한 금액 반환 -개점 후: 반환하지 않음	가맹점 운영권 (1개점 한정)
교육비	5,500		교육 1일전 반환 가능 교육 이후 반 환불가		가맹점 운영교 육
합 계	16,500				

1-2)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최초가맹금 내역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입비	11,000	계약 체결 익일부터 3일 이내	영업 개시 이 전까지 계약 해지	-개정 전 : 제공서비스(교육 및 정보 제공 대가)의 비용 및 영업개시 행사를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을 제외한 금액 반환 -개정 후: 반환하지 않음	가맹점 운영권 (1개정 한정)
교육비	5,500		교육 1일전 반환 가능 교육 이후 반 환불가		가맹점 운영교 육
합 계	16,50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 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1,000	계약 체결 익일부터 3일 이내	- 가맹금, 물품 대금 미지급, 가맹본부 공급 물품 파손 등 - 계약종료 후 조치(영업 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의 미이행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 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계약이행보증금 중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 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 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 (단위 : 천원)/부가세 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최초가맹금	16,500	16,500
계약이행보증금	1,000	1,000
합계	17,500	17,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기준: 66㎡(20평),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3.3 ㎡ 기준			
총계		104,500	5,225			
인테리어	지정업체 (미정)	44,000	2,200	- 계약금 40% (계약 체결 후 3 일 이내) - 중도금 40% (착공 후 3 일 이내) - 잔금 20% (완공 후 7 일 이내)	공사 전	철거 등 별도
주방기기	지정업체 (미정)	33,000	1,650		공사 전	
의탁자	지정업체 (미정)	5,500	275		공사 전	
식기	지정업체 (미정)	7,700	385		공사 전	
간판	(협력업체)	5,500	275		주문 전	
초도물품	가맹본부	8,800	440	입고 시	입고 전	

① 귀하는 가맹점 인테리어 및 일부 기기장비의 시공 및 공급을 가맹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시공수준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산술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 별도비용: 외장공사,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 본부가 아닌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매뉴얼 제공 및 감리 비용으로 하기 표에 명시된 금액을 착공 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당사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공사를 다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기준: 66㎡(20평),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7,700			66㎡ 기준
감리비	가맹본부	4,400	착공 전	공사 전	3.3㎡ 당 220천원 (가맹사업자가 자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적용)
시공 매뉴얼/도면 제공비	가맹본부	3,300	착공 전	소멸 성	매장 실사 및 매뉴얼 제 공/도면 작성 비용
합 계		7,700천원			

★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한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 금액의 2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날로부터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 금액의 5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날로부터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 금액의 70%

- 상기 표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귀하에게 그 진행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 입지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입지선정에 최대한 노력하나, 가맹점 입지선정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입지선정의 최종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선 정 주 체	선 정 기 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1) 귀하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함. 2) 귀하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할 경우 :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귀하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귀하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귀하의 최종 결정

	3) 가맹본부가 점포 입지를 선정해 놓은 경우 : 귀하에게 점포 입지 안내 → 귀하와 담당자가 현장 확인 → 귀하의 최종 결정 ※ 당사가 조연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	--

7) 가맹점 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채용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 육 기 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 교육과정을 이수 해야함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파산, 피한정후견인 외 조건 없음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가맹점주가 채용	국내 고용기준에 준함 만 18세 이상일 것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함)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순공공 순대급창전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상기 품목은 매장 규모 및 메뉴 등에 따라서 물품 내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9)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광고/판촉 시 비용 부담 :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광고/홍보/판촉 시 당사가 세부계획 수립 후 비용분담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익월 15일	후불로 반환되지	로열티는 상호,	가맹점사업자는

		33만원		없음	상표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후불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정기휴무 이외의 휴무 발생 시 역산하여 환산한 월 매출액을 근거로 계속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필요시 실시	계약 체결 익일 3일 이내	미 시행 시 반환	시행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미 시행 시 반환	시행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미 시행 시 반환	시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 없음	간판 변경 사유에 따라 비용 분담	간판변경 15일 이전	미시행시 반환	시행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 없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해당사항 없음)

구분 (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 • 재고관리 감독

당사는 매뉴얼을 토대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매장관리	- 정기방문(월1회) - QCS(품질, 위생, 서비스) 점검 - 월 가맹점 매출 및 손익분석 - 매장 전반 위생 상태 점검 - 인테리어•기기 A/S 접수 및 처리 - 원.부재료 관리	정기/수시	문의 : 본사 1670-1987
고객 컴플레인 처리	- 고객 컴플레인 접수 및 처리 - 매장 내 고객 서비스 실태 점검	수시	문의 : 본사 1670-1987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를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 유지해야 하며, 당사가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해야 하며, 당사가 귀하의 점포에 전산 매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종료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 종료된 후 재계약 결격사유가 없으면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 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과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과정의 부담

양도 양수 시 양수인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맹계약 체결 시 재 오픈에 따른 아래의 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단 양도양수시 양수인이 가맹본부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입비, 교육비 매뉴얼/경영지도비, 보증금 등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내용	비용	비고
최초가맹금	16,500천원	
계약이행보증금	1,000천원	부가세 없음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 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일(日) 당 일금 일십일만원(₩110,00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가맹본부는 제1항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전화번호 등록 및 안내 문구, 인터넷상의 브랜드 명칭사용 등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휴업/폐업 사실증명서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또한,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 관리상태 등을 고려해 당사 물품 반품 기준에 부합하면 반품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품 불가 기준 : 유통기한 3개월 미만, 원두 종류, 포장재 훼손(포장재 글씨 기입/파손/MD 포장박스 분실 등), 박스 단위 출고품의 날개 반품, 개봉/사용 물품, 냉동/냉장 제품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 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순곰궁 순대곰창전골]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방기기·주방집기·부자재·식자재·외부·내장재·설비·인테리어·의탁자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해당 사항 없음)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2				
3				
4				
5				

2)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순공공 순대공창전골]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순공공 순대공창전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계					

2) 당사가 [순공공 순대공창전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곱궁 순대곱창전골

주 문 전 화 | 042-482-8220
가맹점문의 | 1670-1987

특 선 메뉴	식 사 류	한접시메뉴	사리류
순대곱창전골 대 (3~4인분) 33,000 중 (2~3인분) 29,000 소 (2인분) 23,000 닭갈비 대 (3~4인분) 33,000 중 (2~3인분) 29,000 소 (2인분) 23,000	내 장 국 밥 8,000 내장+머리국밥 8,000 내장+순대국밥 8,000 순 대 만 국 밥 8,000 머리+순대국밥 8,000 머 리 만 국 밥 8,000 국 밥 8,000 (국밥류 특으로 변경시 1,000원 추가)	왕 순 대 13,000 소 순 대 9,000 누름머리고기 9,000 내 장 13,000 모듬 한 접 시 33,000 주류 소 주 4,000 맥 주 4,000 막 걸 리 4,000 음 료 수 2,000	내 장 사 리 13,000 순 대 사 리 9,000 떡 사 리 2,000 치즈 떡 2,000 치즈 사 리 2,000 수제비사리 2,000 당면사리 2,000 닭갈비아채 2,000 전골야채 2,000 라면사리 1,000 볶음밥 2,000

모든메뉴 포장 가능합니다.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윗쪽에 기재된 이외의 서비스 및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상품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	해지는 가맹 사업법에 따라 진행됨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 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공급하는 상품(완성품에 한함)이라도 브랜드 및 제품의 광범위한 홍보를 위해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방문판매, CVS, 대형마트(할인점), SSM, 인터넷 쇼핑몰 등] 가맹점 이외의 유통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상품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곱궁 순대곱창전골 주 문 전 화 042-482-8220 가맹점문의 1670-1987			
특 선 메 뉴	식 사 류	한 접 시 메 뉴	사 리 류
순대곱창전골 대 (3~4인분) 33,000 중 (2~3인분) 29,000 소 (2인분) 23,000 닭갈비 대 (3~4인분) 33,000 중 (2~3인분) 29,000 소 (2인분) 23,000	내 장 국 밥 8,000 내장+머리국밥 8,000 내장+순대국밥 8,000 순 대 만 국 밥 8,000 머리+순대국밥 8,000 머 리 만 국 밥 8,000 국 밥 8,000 (국밥류 특으로 변경시 1,000원 추가)	왕 순 대 13,000 소 순 대 9,000 누름머리고기 9,000 내 장 13,000 모 듈 한 접 시 33,000 주 류 소 주 4,000 맥 주 4,000 막 걸 리 4,000 음 료 수 2,000	내 장 사 리 13,000 순 대 사 리 9,000 떡 사 리 2,000 치 즈 떡 2,000 치 즈 사 리 2,000 수제비사리 2,000 당면사리 2,000 닭갈비아채 2,000 전골야채 2,000 라면사리 1,000 볶음밥 2,000
모든메뉴 포장 가능합니다.			

가맹계약 전 숙지 하셔야 하며, 메뉴 및 가격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후 공문 및 홈페이지 기재합니다. 메뉴의 추가/변경/삭제 시 포스에 별도 공지 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순대 및 곱창, 닭갈비, 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순곱궁 순대곱창전골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1) 영업거점지역은 가맹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로 설정 2)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제외 3) 주택가, 아파트상권의 경우 주 동선 기준 4) 고립상권의 경우 고립지역만 상권 부여 5) 기업체, 학교, 관공서, 병원, 대형슈퍼, 연금매장, 백화점, 할인점, 버스터미널, 기차역, 지하철역내 등 특수상권인 경우 별도 상권으로 분리 6) 2)3)항의 경우라도 점포 앞 도로가 왕복4차선 초과하면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 7) 이면도로 이상의 도로에 위치하며, 배달에 용이성이 뛰어난 곳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지도 상 날인한 영업지역 내에 [순곱궁 순대곱창전골]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영업권 내의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추가 개점하거나, 기존 가맹점을 폐점한 후 재출점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화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 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순공공 순대공창전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아래 업체에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 사항 없음)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²⁾
2023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순공공 순대공창전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 년이며, 이후 재계약(갱신)의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 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관련 계약 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상품, 용역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 제조공법 또는 레시피,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서 제43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승인 없이 전항의 각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가맹본부의 서면승인 하에 변경할 때 그 변경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통지하지 않은 경우 5.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되고 영업지역 내 적정한 점포임차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6. 가맹점사업자의 채무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7.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 회 이상 위반한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대금 결제를 지체하는 경우 1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계약서 제44조 1항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16.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의 승인 없이 자점 매입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17.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가맹점사업자가 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21.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2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23.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하는 경우 24. 가맹사업자가 본사와 사전협의없이 임의로 휴무를 하였을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	계약서 제44조 2항

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의 경우, 사전 통보 및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 1.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2.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51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계약기간 중 계약 수정에 동의 또는 합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으나, 계약만료일로부터 180일부터 90일사이의 기간 동안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식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여 통지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계약의 수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POS 매출 자료를 귀하의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사 070-8887- 0717
---------------------------------------	--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의 희망에 따라 양도자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여 계약하거나 신규 가맹계약으로 선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은 잔여계약기간에 대하여 가맹점 운영권이 인정됩니다.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양도 양수 시 양수인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맹 계약 체결 시 재 오픈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교육비, 매뉴얼/경영기업 전수비 등 부담비용,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비 고
상속	본부 사전 서면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함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지불
대리행사	본부 사전 서면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대리경영을 시킬 수 있 으며,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대리 경영자가 부담함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피자를 판매하는 업종의 브랜드로서 본사의 영업 및 기술적인 노하우 유출방지와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계약 기간 중에 본인 또는 타인명의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월요일 ~ 일요일	11:00~22:00	- 명절 당일 포함 2일 휴무 제외 연중영업	문의 : 본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가맹 본부에 휴업하기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환경 및 근무자 위생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감독 항목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근무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정기/수시	문의 : 본사	
기기장비				
식품 위생				
고객서비스				
메뉴 레시피				
기타(매장 비치 서류 등)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전액 부담	없음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 참여여부 결정 →	대중매체 광고 명절,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가맹점부담액 제시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전사 프로모션용 무료 메뉴권	- 할인 금액 본사부담 - 무료 메뉴권의 경우 전액 본사 부담	없음		
기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매장관리팀과 협의 후 진행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담긴 자료를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가맹본부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가맹계약서 제48조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약별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1일 이내- 최초가맹금의 20%
2. 계약 체결일로부터 1일 경과 10일 이내- 최초가맹금의 50%
3.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 최초가맹금의 70%

단, 가맹본부가 해당 점포의 내·외장 공사 등을 착수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약벌과 별도로 투입된 점포 공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당한 금액의 기준은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상 명시된 공사 중 발주 및 시공 완료된 공사비 및 간접비, 시공사 이윤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기준으로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가 [제25조]의 “원·부재료 등의 직접 조달”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자체적으로 매입한 금액 × 5를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46조]의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서 금이천만원정(₩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의적인 중도해지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가 배상하기로 한다. 배상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남은 계약일 × 오만원정(₩50,000)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 한도는 금이천만원정(₩20,000,000 원)으로 한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그 침해가 중지되는 날까지 1일당 금일십일만원정(₩110,000/부가세포함)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100일 내외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교부 - 인근 10개가맹점현황문서 제공	D-100	9페이지 ~11페이지 참조
점포개발	- 입지선정(주변시세 파악, 건물등기, 토지대장 등)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상권분석	- 입점 후보지 상권분석(주거형태 및 오피스, 유동 인구, 동종업종 등)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89~87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86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85~83(3일)
매장 실측/설계	- 실측 및 실측도 작성 - 주방도면 작성 및 수정 - 인테리어 도면, 3D도면 작성 및 수정 - 간판, SIGN물 등 디자인 협의	D-82~69(14일)
인테리어 공사 및 매장 인허가 실시	- 인테리어 관련 계약 체결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점주 위생교육 및 사업자 신청 (구청위생과, 요식업조합 신청)확인 - 가맹점 매장 전화 신청 - 그 외 기타계약 체결 - 미비 공정 작업	D-68~10일(58일)
개점 전 교육	- 점포운영 - 기기장비 조작 - POS 조작 - 서비스 - 물류시스템 - 실전 모의 훈련 (현장실습) * 추가 개설 매장 교육은 해당 일정 내에 진행	
기기 및 용품 발주	- 기기 및 물품 발주	D-18
인테리어 완료	-기계 입고, 설비 및 인테리어 완료	D-9
부자재 입고	-초도물품, 부자재 발주 및 입고	D-8~3
오픈 교육 / 개점 준비	- 인테리어 시설, 집기, 초도물품 등 본사직원 및 점주 체크 - 매장 현장 교육(롤플레이잉) - 매장 오픈 준비	D-4~1
개점	- 개점 행사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점포 입지 선정이 늦어질 경우 및 영업 인허가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가맹본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 거래분쟁 조정 협의회**에 조정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 차후 진행 시 사전협의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 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 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순급공 순대급창전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 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 본사 교육장 : 매장 운영, 기기설비 운영, 서비스, 위생, POS 사용법 교육 (시험 포함) - 매장 : 현장실습 * 추가 매장 개설 시 본사 협의 후 본사 교육장 테스트 진행	4주 현장 실습교육	가맹계약체결 후 개업하기 이전까지 이수	필수교육
보수 교육	- 본사 교육장 : 메뉴 이론, 기기설비 운영, 메뉴 제조 실습, 서비스, 위생, POS 사용법 교육 (시험 포함)	집단강의 후 실습교육	개점 후 필요시	상황 발생 시 선택사항
특별 교육	신제품 교육 외 영업방침 행정조치에 따른 소집교육	집단강의	개점 후 필요시	상황 발생 시 선택사항

* 신규 교육의 내용

최초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순급공 순대급창전골 가맹점의 경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교육훈련 전(全)과정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수료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교육 수료증을 교부 받은 이후에 가맹점운영권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가맹점사업자의 교육훈련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여 1명이 입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 인원이 4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1명당 금 백십만원(1,100,000원(VAT 포함), 1인당 영업방법전수비)의 교육비를 추가로 가맹본부에게 납입해야 한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4주(현장교육)동안 시행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회사소개/가맹사업의 이해·고객관리·원부자재관리/조리교육·POS시스템·발주관리·재고관리·점포기기관리·안전관리, 작업/인사관리·점포회계/세무 등 가맹점운영교육과 고객 응대방법 · 주요상품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5. 가맹본부는 교육훈련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하며, 수료 기준
--

과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수료기준: 현장 교육 수행 태도 등

나. 불합격 기준 : 현장 교육 수행 태도 등 불량 시,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중 1인이더라도 불합격한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교육 2회 이상 결근 시

다. 불합격자 재교육기간: 교육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라. 재교육 비용 : 금 삼십삼만원(330,000원(VAT포함))(식대, 강사료 등, 피교육점주 부담)

6. 보수교육은 가맹본부에서 시행하는 매장평가점수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와 점 운영 시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이 6개월에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7. 추가 매장 개설 교육 : 추가 매장에서 근무 할 직원 1인에 대해 2주 테스트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담당자와 협의 하에 오픈 전 교육수료를 완료한다.

가. 테스트 교육 전 4인에 대한 교육비를 본부로 납입해야 하며, 추가 인원은 별도 산정한다.

나. 추가 매장에서 근무 할 직원 1인 미달 시 테스트 교육 불가

다. 불합격 시 추가 테스트를 실시하며, 오픈관련 협의를 진행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순금공 순대곱창전골]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비고
신규교육 (이론+실습)	8주	5,500천원	교육비는 신규+현장+오픈 교육비를 포함하는 금액임. * 추가 오픈매장 동일
보수교육	필요시 산정	교육실시 전에 교육비용 등을 통지, 통상실비 수준	추정금액 사전고지
특별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신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오픈이 연기될 수 있거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해당 사항 없음)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매장 지원팀(1544-201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1)[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3) 예치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4) 수령확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